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3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협의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16. ~ 12. 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노현아 (☎2133-674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동담당관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아동복지법」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아동복지법」제56조	구청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 제6항		
	나. 정기 검사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제34조		
	다. 부정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제52조		
	라.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제4항		
	마.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제63조제2항		
	바.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제6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2.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생활용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생활용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4.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p> <p>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p> <p>다. 검사 등</p> <p>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p> <p>마. 실태조사 등</p> <p>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p> <p>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p> <p>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p> <p>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p> <p>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p> <p>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6.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p>	<p>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p> <p>○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p> <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p> <p>○ 대부업법 제3조의 3, 제5조</p> <p>○ 대부업법 제12조</p> <p>○ 대부업법 제13조</p> <p>○ 대부업법 제16조</p> <p>○ 대부업법 제17조</p> <p>○ 대부업법 제21조</p> <p>○ 대부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설립신고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확인증 발급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11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업입지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다. 개발토지의 분양·임대업무 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 산업집적법 제33조 ○ 산업집적법 제36조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구청장

□ 복지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p> <p>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p> <p>마. 감사의 추천</p> <p>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p> <p>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p>	<p>○「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p> <p>○「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6항</p> <p>○「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7항</p> <p>○「사회복지사업법」제24조</p> <p>○「관세법」제91조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40조 제3항</p>	구청장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도시철도법」제9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구청장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9조	구청장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1. 차량의 연장 (차량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p> <p>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p> <p>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나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나목, 제26호라목, 마목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p> <p>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p> <p>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p>	<p>○ 여객자동차법 제23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3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4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4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6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94조</p>	<p>구청장</p>
택시정책과	<p>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p> <p>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9조</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및 반환</p> <p>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p> <p>2.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p> <p>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p> <p>다. 등록의 거부</p> <p>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p> <p>마. 변경등록의 처리</p> <p>바. 이전등록의 처리</p> <p>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p> <p>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p> <p>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p> <p>차. 압류등록의 처리</p> <p>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p> <p>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p> <p>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p>	<p>○「자동차관리법」제7조</p> <p>○「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8조 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제4조 제2항</p> <p>○「자동차관리법」제9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제6항</p> <p>○「자동차관리법」제10조</p> <p>○「자동차관리법」제11조</p> <p>○「자동차관리법」제12조</p> <p>○「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p> <p>○「자동차관리법」제13조제6항</p> <p>○「자동차관리법」제13조제8항</p> <p>○「자동차관리법」제14조</p> <p>○「자동차관리법」제16조</p> <p>○「자동차관리법」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2항·제4항</p> <p>○「자동차관리법」제28조</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9조	구청장
	4.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5.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제72조	구청장
	6.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제73조	구청장
	7.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7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3항제33호	구청장
	8. 청문(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9.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0.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구청장
	11.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	구청장
	1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상속의 신고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 여객자동차법 16조제2항,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구청장
물류정책과	1.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용신고 나. 임대허가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4.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시행위의 인가 및 변경인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같은 법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법」제55조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	○「도로교통법」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사. 보고 및 검사	○「도시가스사업법」제5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10호까지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10조 ○ 석유사업법 제11조 ○ 석유사업법 제12조 ○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 ○ 석유사업법 제30조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 청 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보고 및 검사 마. 청 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신고필증 발급 다. 취소	○ 석유사업법 제40조 ○ 석유사업법 제49조 제3항 ○ 석유사업법 제33조 ○ 석유사업법 제34조 ○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 석유사업법 제40조 ○ 석유사업법 제49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 제3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제4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6조제1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 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 제4항제12호, 제5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5조 ○ 「전기사업법」 제71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 제3호, 제2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p> <p>나. 과태료의 부과·징수</p> <p>8.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시정명령 등</p> <p>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p> <p>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p>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p>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p> <p>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p> <p>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전기사업법」 제71조</p> <p>○ 「전기사업법」 제108조</p> <p>○ 「전기공사업법」 제27조</p> <p>○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p> <p>○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p> <p>○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p> <p>○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대기정책과</p>	<p>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p> <p>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p> <p>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p> <p>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p>	<p>○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p> <p>○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p> <p>○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p> <p>○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p> <p>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p> <p>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p> <p>사. 청 문</p> <p>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p> <p>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p> <p>다. 등록취소시 청문</p> <p>라. 과태료 부과</p> <p>3.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무</p> <p>가.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p> <p>나. 시공감리자의 지정</p> <p>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p> <p>라. 등록취소시 청문</p> <p>마. 과태료 부과</p> <p>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제4항</p> <p>○「대기환경보전법」제82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85조</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p> <p>○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p> <p>○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p> <p>○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p> <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5호까지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5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30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37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61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제70조의2</p> <p>○「대기환경보전법」제94조</p> <p>○「소음·진동관리법」제36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정책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 체육시설법 제14조 ○ 체육시설법 제17조 ○ 체육시설법 제19조 ○ 체육시설법 제27조 ○ 체육시설법 제28조 ○ 체육시설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체육시설법 제36조 ○ 체육시설법 제40조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종합병원·병원등의 변경 허가 다. 지도와 명령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 「의료법」 제59조제1항	구청장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구청장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출입·검사와 수거 나.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법 제41조 ○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 ○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마약류관리법 제69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 리</p> <p>나. 보고와 검사 등</p> <p>다. 폐기명령 등</p> <p>라. 검사명령</p> <p>마. 개수명령</p> <p>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p> <p>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p> <p>아.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p> <p>○ 「약사법」 제69조</p> <p>○ 「약사법」 제71조</p> <p>○ 「약사법」 제73조</p> <p>○ 「약사법」 제74조</p> <p>○ 「약사법」 제76조의2</p> <p>○ 「약사법」 제81조</p> <p>○ 「약사법」 제98조</p>	구청장
	<p>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p> <p>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p> <p>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p> <p>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p> <p>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p> <p>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p> <p>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p> <p>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p> <p>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p> <p>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p> <p>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p>	<p>○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p> <p>○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p> <p>○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p> <p>○ 「의료법」 제51조</p> <p>○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p>	구청장
	<p>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등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p>1.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해당기관(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2.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3.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당해 보조기관의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p>

□ 재난안전관리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설혁신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다. 등록의 갱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라. 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바. 건설기계 저장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감사의 최고 다. 감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인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81조	구청장 구청장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 제66조 ○ 「도로법」 제72조 ○ 「도로법」 제117조	구청장

주택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구청장
	2.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주택법」제15조, 제16조	구청장
	3.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주택법」제43조, 제44조	구청장
공공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택지개발촉진법」제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지원과	1.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제1항	구청장
	2.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제94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검 사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82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5항	구청장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	○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 「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 「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도시공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가. 연수교육 실시 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구청장 구청장

□ 균형발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정비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31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6조	구청장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p> <p>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p> <p>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p> <p>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p> <p>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p>	<p>○ 공원녹지법 제38조</p> <p>○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p> <p>○ 공원녹지법 제12조</p> <p>○ 공원녹지법 제13조</p>	<p>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 구청장</p> <p>구청장</p>
자연생태과	<p>1. 방제명령 등</p> <p>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p> <p>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p> <p>나. 지정서 교부</p> <p>다. 지정 취소</p> <p>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감독 사무</p> <p>가. 변경신고 수리</p> <p>나. 과태료 부과·징수</p>	<p>○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p>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p> <p>○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p> <p>○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p> <p>○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p> <p>○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 제1항</p> <p>○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 제2항</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야.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 「축산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료관리법」 제25조 ○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86조 ○ 「사료관리법」 제27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 「사료관리법」 제24조 ○ 「사료관리법」 제30조	구청장 구청장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치수안전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 「하천법」 제5조 ○ 「하천법」 제15조 ○ 「하천법」 제14조 ○ 「하천법」 제52조 ○ 「하천법」 제30조 ○ 「하천법」 제30조 ○ 「하천법」 제33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p> <p>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p> <p>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p> <p>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p> <p>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p> <p>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p> <p>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p> <p>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p> <p>어. 「하천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p> <p>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되는 제외한다)</p> <p>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p> <p>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p> <p>다. 점용료 등의 감면</p> <p>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p> <p>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p>	<p>○ 「하천법」 제36조</p> <p>○ 「하천법」 제38조</p> <p>○ 「하천법」 제68조</p> <p>○ 「하천법」 제69조</p> <p>○ 「하천법」 제70조</p> <p>○ 「하천법」 제72조</p> <p>○ 「하천법」 제90조</p> <p>○ 「하천법」 제47조</p> <p>○ 「하천법」 제48조</p> <p>○ 「하천법」 제76조</p> <p>○ 「하천법」 제77조</p> <p>○ 「하천법」 제78조</p> <p>○ 「하천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p> <p>○ 「하천법」 제91조</p> <p>○ 「하천법」 제98조</p> <p>○ 「하천법」 제27조</p> <p>○ 「하천법」 제37조</p> <p>○ 「하천법」 제37조</p> <p>○ 「하천법」 제67조</p> <p>○ 「하천법」 제46조</p>	<p>구청장(다만 한강은 미래한강본부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축탁 관리청 명칭 첨기)	○ 같은법 제10조제6항	구청장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26조	물재생센터 소 장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6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물재생센터 소 장
	3. 적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24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	물재생센터 소 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물재생센터 소 장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23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8조	물재생센터 소 장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31조	물재생센터 소 장
	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8.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구청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나.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3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소방서장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 소방시설법 제31조	소방서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다. 지위승계 신고</p> <p>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p> <p>마. 과징금 처분</p> <p>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 록</p> <p>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p> <p>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p> <p>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소방시설법 제32조</p> <p>○ 소방시설법 제35조, 제49조</p> <p>○ 소방시설법 제36조</p> <p>○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p>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p>	<p>소방서장</p> <p>구청장</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	---	---	---

□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창의 행정 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조직담당관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경제정책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전략산업기반과	1. (생략)		(생략)

□ 경제정책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산업입지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기후환경 정책과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기후환경 정책과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자원회수 시설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계획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	
자원 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폐기물관리법」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구청장 구청장
자원 순환과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원 순환과 자원회수 시설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4호와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원 순환과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u>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u> 또는 정신병원(이하 " <u>병원</u>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u>병원</u>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u>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u> 또는 정신병원(이하 " <u>병원</u>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u>종합병원·병원</u> 등의 변경 허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도시계획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생략)	1. (생략)	○ (생략)	(생략)

□ 도시공간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자연 생태과	<p>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 감독 사무</p> <p>가. 변경신고 수리</p> <p>나. 과태료 부과징수</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 제1항</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 제2항</p>	구청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노현아(☎ 2133-6744)